

## 이천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

소관부서 : 농업기술센터(농업정책과)

제정 2004· 3· 22 조례 제 487호  
개정 2008· 7· 25 조례 제 720호  
(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)  
일부개정 2019· 1· 1 조례 제1464호  
(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)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내수면어업법」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수면어업 면허 및 어업허가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수면어업에 관한 주요현안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기능)**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.

1. 내수면의 종합적인 이용·관리와 수산자원의 보호·육성에 관한 사항
2. 「내수면어업법」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면허 및 허가 등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
3. 수산사업대상자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
4. 기타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
**제3조(구성)** ①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협의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.

〈개정 2008· 7· 25, 2019· 1· 1〉

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관계공무원
2. 내수면어업인 대표
3. 내수면어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4.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
**제4조(임기)**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

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 다만, 공무원의 경우에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.

**제5조(위원장의 직무)** ①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를 통괄한다.

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**제6조(간사 등)**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내수면어업 업무담당주사로 한다.

**제7조(회의개최)** ①협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협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,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.

**제8조(안건의 배부)**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전에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사항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 당일 배부할 수 있다.

**제9조(회의결과에 대한 조치)**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**제10조(수당)** 협의회에 출석하는 위원중 이천시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「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**제11조(준용규정)**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「내수면어업법령」을 준용한다.

**제12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8·7·25 조례 제720호,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>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** ①부터 ⑩까지 생략

⑪ 「이천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설치운영 조례」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산업복지국장”을 “산업환경국장”으로 한다.

⑫부터 ⑰까지 생략

부칙 <2019·1·1 조례 제1464호,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>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** 생략

**제3조** 생략

**제4조(다른 조례의 개정)** ① 부터 ⑮ 까지 생략

⑯ 「이천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」 제3조제2항 중 “산업환경국장”을 “농업기술센터소장”으로 한다.

⑰ 부터 ㉑ 까지 생략